

8.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245호 2000. 1. 2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건설·정비·개발등”을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중 “용도지역안에서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지역안에서”를 “용도지역안에서”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12조제4항”을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 및 동법 제30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 후단중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계획법 및 도시개발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회보